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
[서울행법 2008. 7. 25. 2008구합1009]



【판시사항】

- [1]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
- [2]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
- [3]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 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

【판결요지】

- [1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,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.
- [2]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가 전제되어 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.
- [3]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'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'라고 볼 수 없으므로,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- [1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5조
- [2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
- [3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
【전문】

- 【원 고】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(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민)
- 【피 고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(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)
- 【변론종결】2008. 6. 27.

【주문】

1

1. 피고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, 원고에 대하여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가. 2007. 12. 17. 한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,
- 나. 2008. 1. 4. 한 수능등급구분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
- 각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주문과 같다.

[이유]

】1. 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. 7. 15.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시민단체로서,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피고(당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)에게, ① 2007. 12. 10.에는 수험생의 원점수정보(이하 '원점수정보'라 한다)의 공개를, ② 같은 달 26.에는 수능등급구분점수정보(이하 '등급구분점수정보'라 하고, 이를 원점수정보와 통틀어 '이 사건 정보'라 한다)의 공개를 각 청구하였다.
- 나.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, ① 2007. 12. 17.에는 "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고, 원점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수험생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.
- "는 이유로 원점수정보의 공개를, ② 2008. 1. 4.에는 "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등급구분점수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다.

"는 이유로 등급구분점수정보의 공개를 각 거부하였다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, 갑 제4호증의 1, 2의 각 기재

2.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당사자의 주장 요지

(1)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고,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이하 '정보공개법'이라 한다)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.

(2) 피고의 주장

원고는 수험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,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, 이 사건 정보는 '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'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

인정 사실

(1) 피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제공됨으로써 과열경쟁, 사교육비 과다지출 및 대학서열화를 유발하던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4. 10. 28.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제(이하 '수능등급제'라 한다)의 도입을 확정·발표하였다.

- (2) 피고는 수능등급제에 따라 2006. 8.경에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, 2007. 3.경에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각 수립·발표하고 2007. 11. 15.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 뒤, 수험생 및 대학에게 해당 수험생의 성적을 시험영역·과목별로 등급(전체 9개의 등급 중)만 표기하여 통지하였다.
- (3) 한편,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산출업무를 위탁하였다.
- [인정 근거]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라. 판 단
- (1) 원고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
- 피고는 "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들만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. "는 취지로 주장한다.
-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5조는 "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권을 가진다.
 - "고 규정하고 있고, 피고의 위 주장은 관계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, 원고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.
- (2)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지 여부
- (가)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,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(대법원 2007. 6. 1.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).
 - (나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음을 직접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,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.
 - ① 수능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'모든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산출하고, 이를 종합하여 등급구분의 기준이 되는 등급구분점수를 결정한 다음,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'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.
-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주무부처인 피고가 등급구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,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"피고는 수험생이 자신의 등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수험생의 등급이 올바른지 검증할 자료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.
- "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, 그러한 자료로서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가 아닌 다른 자료를 상정하기는 어렵다(이 점에서 "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'수험생의 답안으로부터 수능등급제에 따른 등급만을 곧바로 산출하고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는 산출하지 않는 방식'의 채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산출하였으므로,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서도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"는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)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는 그 자체로는 수능등급제에 있어서 대학입학전형의 자료로서 의미를 갖지 않지만, 등급산출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,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폐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.
- 다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"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려면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의미에 따라 최초의 채점자료들을 새롭게 재가공하여야 한다.
- "는 취지로 주장하나, 피고는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·가공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사실상 이 사건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, 피고 주장의 위 사정은 이 부분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.
- (3)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
-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'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'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, 이러한 주장은 "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.
 - "는 취지로 해석된다.
- 이에 따라 먼저 원점수정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 개를 청구하였을 뿐이고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, 원점수정보는 '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'라고 보기 어렵고,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(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, 피고로서는 원점수정보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).
 - 다음으로 등급구분점수정보에 관하여 보건대, 피고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 단지 "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등급구분점수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않다.
- "는 이유만을 명시하였던바,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점(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)에 비추어 볼 때, 등급구분점수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등급구분점수정보는 개인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'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'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, 등급구분점수정보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(4) 소결론

결국,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판사 이경구(재판장) 이진석 정욱도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